

의안번호	제 518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회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회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발 의 자 : 임회무 · 황규철 · 이의영 · 김인수 ·
엄재창 · 임병운 · 박우양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, 「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도 동일한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기존 ‘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’을 ‘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’으로, ‘「여성발전기본법」’을 ‘「양성평등기본법」’으로 명칭 변경 (안 제2조)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”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 중 ‘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’을 ‘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’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여성정책”이란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“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“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양성평등“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